

#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옥재은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94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10월 17일

발 의 자: 옥재은, 경기문, 김규남,  
김길영, 김동욱, 김용일,  
김원중, 김지향, 김형재,  
김혜영, 남창진, 문성호,  
민병주, 박철성, 박환희,  
송경택, 이민석, 이상욱,  
이영실, 이종태, 이효원,  
장태용, 채수지, 최민규,  
홍국표, 황철규 의원(26명)

## 1. 제안이유

- 50플러스재단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, 기존 복지정책실(인생이모작지원과) 및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에서 2022.8.19.일자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평생교육국(평생교육과) 소관으로 변경되었기에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개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33조(상임위원회 소관) 에 ‘50플러스재단에 관한 사항’ 신설(안 제33조제1항제2호)

## 3. 참고사항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제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6호사목을 삭제한다.

하. 50플러스재단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33조(상임위원회의 소관) ① 상임 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  략)</p> <p>2. 행정자치위원회     가. ~ 파. (생   략)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 <p>3. ~ 5. (생   략)</p> <p>6. 보건복지위원회     가. ~ 바. (생   략)</p> <p>    <u>사. 50플러스재단에 관한 사항</u></p> <p>    아. · 자. (생   략)</p> <p>7. ~ 11. (생   략)</p> <p>② (생   략)</p>	<p>제33조(상임위원회의 소관) ① 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    가. ~ 파. (현행과 같음)</p> <p>    <u>하. 50플러스재단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    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  제&gt;</u></p> <p>    아. · 자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